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1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승수 · 박충권 · 추경호
안상훈 · 서천호 · 강명구
엄태영 · 서범수 · 정동만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의8제4항 중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
4.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 -----.
5.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생 략)	5. <u>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u>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다음</u> <u>각 호의 사항을</u>----- ----- ----- ----- -. 1. <u>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u> 2. <u>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u> 3. <u>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u> 4. <u>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u> 5. <u>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
---	--